2006. 6. 2.

인도네시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목차

1. 인도네시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인도네시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 인도네시아는 농수산물의 경우 과일은 모든 일반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이 허용되나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에 인도네시아 보건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소주 및 탁주의 경우에는 APPOINTED IMPORTER(I.T.)에 의해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
- 수출입관련 주요 규정 및 내용
  - THE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230/MPP/KEP/7/1997
    >상기규정은 주로 수입절차에 관한 것으로 APPOINTED IMPORTER(I.T.)에 의해서만 수입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고 있음. (우유, 치즈, clove, 알콜음료, 맥주, 와인, 베르무트주, 사이다, 페리주, 사케(sake rice wine), 꿀물(mead), tody(벌잡이 부채새류), 껌, 태피아 술, 진 및 네덜란드 진(술), 보드카, liquuers and cordials)
- 수입식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BPOM)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고 일부 제품은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기도 함
- 식품첨가물의 경우 추가승인이 필요하고 특수 표지요건의 적용을 받음
- 식품 표지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필수 정보에는 제품명, 중량이나 부피, 유통기한, 제품 코드, BPOM 등록번호, 제조자나 수입자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됨
- 원산지규정
  - local content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C/O)을 발급해주고 있음
  - '96.6.4일 규제철폐 조치에 의거 원산지 발급절차를 완화함. 원산지 증명서 관련규정을 대폭 줄였고 첨부서류도 종래 4가지에서 2가지로 축소 조치함
- 통관절차
  - 수입업자는 송장 등 통관서류와 세관신고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관세를 납부함
  -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고 관세액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관세납부영수증을 발부함(약 1일 소요)

· 수입업자는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세관은 통관서류의 자료를 세관컴퓨터에 입력하며(1일 이상 소요) 수입품가격과 수입업자가 지불해야할 관세를 확인함. 만약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서류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입력후 세관은 서류상 수입 물품을 직접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함
· 직접 검사는 무작위 추출(random)방식이나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에 행함
·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여부를 결정함. 세관은 관세를 더 지불해야 하거나 서류와 실제가 불일치한 경우에만 물품을 반출을 보류시킬 수 있음
· 새로운 관세법은 관세납부의 자기 신고제(self-assesment), 도착지 검사(on-arrival inspection), 사후 감사제(post-release audit)를 채택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세관신고서를 세관과 은행에 동시 송부함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은행에 관세액을 통보함
· 은행은 검토후 수입업자의 구좌에서 자동결제한 후, 세관으로 관세 납부 사실을 통보함
· 수입업자는 통관서류를 선박으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와 교환함
· 인도지서서를 갖고 수입품을 통관하기 위해 통관장에 가면 세관원은 EDI 검색을 통해 관세 납부여부를 확인함
· 수입품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사나 검사필요성(Intelligence note)이 없으면 통관됨

- 식품위생 검사제도

· 농산물 및 동물의 경우 농업성이, 식품의 경우 보건성이 검역을 관장함
· 인도네시아 보건성은 수퍼마켓 및 여타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식품을 통제함
· 인도네시아 보건성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니 보건성에 의해 검사를 필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가 금지됨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식품은 판매가 금지됨
· 인도네시아 보건성에 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인니 보건성의 소정양식을 작성후 인니 보건성 관련국(Directorate General of Food and Medicine Controller)으로 제출함

>소정양식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

>신청자는 인도네시아 보건성으로부터 등록접수증을 수령함

>인도네시아 보건성은 제출서류를 검토후 서류작성이 미흡할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인니 보건성은 검사결과 일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3개월후 승인서를 발급함